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82 발의연월일: 2025. 2. 12.

발 의 자: 박정현 · 서미화 · 조승래

한창민 • 박홍배 • 박균택

문진석 • 이학영 • 김재원

김현정 · 이재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의 보유 대상자로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호주제가 존속될 당시 규정된 것으로 호주 제가 폐지된 현재 해당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에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 손자녀를 삭제하여 당초 본 법률과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(안 제4 조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외증조부모, 외조부모,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등록의무	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		
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	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		
의 재산(소유 명의와 관계없이			
사실상 소유하는 재산, 비영리			
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			
있는 재산을 포함한다. 이하 같			
다)으로 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본인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.	3		
다만,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	다만, 외증조부모, 외조부모,		
과 외증조부모, 외조부모, 외	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.		
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			
<u>한다.</u>		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		